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 화 재 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 결과 보고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핵심쟁점사항에 대하여 전승자와 의견을 공유하고 무형유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승자 초청 토론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토론회 개요

가. 일 시 : 2012. 6. 14(목) 14:00~20:40

나.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본관)

다. 참석자 : 총 100여명(패널56명, 참관 44여명)

2. 토론 내용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청 의견	비고
1	보호원칙	원형유지	원형유지 원칙 변경 필요	
2	이수증 발급주체	보유자/보유단체	문화재청	
3	전수교육방법 추가	도제식 교육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방법 추가	
4	정년제 도입	현행 유지	만80세 정년제 도입	
5	단체종목 보유자 및 개인종목 조교 불인정	현행 유지	단체종목 보유자 불인정, 개인종목 전승교수 단계적 보유자 전환	

3. 향후 계획

가. 만80세 정년제 조항 삭제 검토, 기·예능 협회와 협의 지속

나. 2012년 말까지 법안 제정 목표

4. 소요예산 : 금7,419,500원(2131-301-210-01)

붙임 1. 토론회 결과 보고 1부

2. 토론회 회의 내용 1부. 끝.

주무관

강병희

행정사무관

김용휘

무형문화재
과장

황권순

문화재정책
국장

전결 2012. 6. 19.

강경환

협조자

시행 무형문화재과-2471

접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2호 / <http://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62 팩스번호 042-481-4979 / krc999@kroea.kr

/ 대국민 공개

실천하는 청렴강령 사랑받는 문화재청

무형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 결과 보고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2. 6. 14(목) 14:00~20: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참석자 : 100여명(패널 56명, 참관 44여명)
 - 전 승 자 30명 : 보유자 10명, 전수교육조교 10명, 이수자 10명
 - 외부전문가 9명 : 법률인 3명, 무형유산 관계자 3명, 일반인 3명
 - 시민단체 10명 : 블로그기자단 5명, 1문화재1지킴이 5명
 - 문화재청 7명 : 정책국장, 무형과장, 이재필 연구관, 여성희 사무관, 김용구 사무관, 임승범 연구사, 진효승 팀장
 - 사 회 1명 : 임돈희 분과위원장

□ 토론내용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청 의견	비고
1	보호원칙	원형유지	원형유지 원칙 변경 필요	
2	이수증 발급주체	보유자/보유단체	문화재청	
3	전수교육방법 추가	도제식 교육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방법 추가	
4	정년제 도입	현행 유지	만80세 정년제 도입	
5	단체종목 보유자 및 개인종목 조교 불인정	현행 유지	단체종목 보유자 불인정, 개인종목 전승교수 단계적 보유자 전환	

□ 향후 계획

- 만80세 정년제 조항 삭제 검토, 가·예능 협회와 협의 지속
- '12년 말까지 법안 제정 목표

□ 행사 사진



무형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 회의자료 (총 5건)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1	무형문화재 보호원칙 변경	< 1차 의견 > ○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전하지 않고 같은 부류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보기로서 즉 전형으로 무형을 정의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본보기가 바뀌게 되어 승계문의 경우도 세월이 흐르면 언제가는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 될 것이다. 본 협회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인정된 시점에 서 원형으로 출발하여야 그나마 옛 지킴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원형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음.	< 1차 의견 > ○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원형이라는 개념은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임. 무형문화재는 어느 특정시기 특정형태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임. 무형문화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원형보존을 규정화한 것은 무형문화재의 멸실을 막고 보호정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로 풀이됨. 이러한 정책적 환경에 힘입어 지금의 무형문화재가 가시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역동적인 특성이 그리하듯이 지정된 무형문화재라 할지라도 지정 이후 짧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보존의 원칙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재의 원형개념은 귀 협회가 정책방향으로 동의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라는 국제적인 보호활동의 추세에서도 맞지 않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정의한 무형유산의 정의와 범위에는 원형에 준한 어떠한 개념과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원형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음. ○우리나라가 무형유산의 보호강국으로서 지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유산의 가치구현과 향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보전원칙에 입각하여 무형유산의 무분별한 창작물을 지정·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향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형을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하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 2차 의견 > ○무형문화재는 어느 특정시기 특정형태로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우하면서 끊임 없이 변화되고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라는 귀 청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형문화재를 같은 부류의 특 징을 나타내는 본보기로서 전형으로만 규정한다면 귀중 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옛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언젠가는 현대화되어 갈 것임. ○무형문화재는 시대적으로 변화되므로 더욱더 원형보전을 하여 근대의 모습이나마 지켜져야 한다고 본 협회는 확 신하며 더불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는 것임. ○따라서 무형유산의 외형적인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 < 2차 의견 > ○원형이라는 개념은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임. 무형문화재는 어느 특정시기 특정형태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임. ○무엇이 원형인지? 누가 결정하는지? 인정·지정 당시의 기능·예능을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이전 선조의 기능·예능은 원형이 아닌지?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2	이수증 발급주체 변경	< 1차 의견 > ○이수자의 선발권을 보유단체나 보유자에게서 청장이나	< 1차 의견 > ○1994년 이후 전승교육 저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총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점차 선배와 선생님을 경시해 가는 현 시대상황에서 이수자 선발권마저 없다면 보유단체나 보유자와 전승교육조교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여 후배들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수자의 선발권은 그대로 보유단체와 보유자에게 현행대로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량강화를 위해서 청과의 긴밀하고도 구체적인 협조를 통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람.	보유자(보유단체)의 이수증 발급은 전승자 확대에 기여한 바 있음. 그러나 이수자 간의 서열화, 이수증 부정발급과 금품수수 등 이수증 교부와 관련되어 벌어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실태는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훼손 및 무형문화재 전반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지로서의 이수자의 기량 및 위상을 향상시키고 이 시대의 최고의 기여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발급주체 및 관리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임.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는 이수자의 심사평가 때와 대학에서의 이수자 전승교육 및 이수자 심사평가 시 해당 종목의 인간문화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존경받고 권위있는 전승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것임.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는 이수자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부담할 것이며, 전승교육대학에서 주관하는 이수자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 2차 의견 > ○이제까지의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이수증 발급에 있어서 귀 청이 지적하시는 많은 문제점을 본 협회도 익히 알고 있지만, 점차 선생님과 선배를 경시해 가는 현 시대상황에서 이수자 선발권마저 귀 청이나 전수교육대학에 주어 진다면 후배들을 이끌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사료되며, 귀 청에서 선발심사 시에 참석 및 감독의 강화를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여 주기를 본 협회가 호소함.	서 부담하게 될 것임. < 2차 의견 > ○이수증 발급을 후배(이수자) 통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이수증 발급 심사 시 해당 종목의 인간문화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유자, 전승교수를 중심으로 한 존경받고 권위 있는 전승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것임. ○이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청이 심사를 주관 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승교수를 참여시켜 심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임. ○대외적으로 보유자·보유단체가 발급한 이수증 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이수증 발급을 확인한 서류가 더욱 공신력을 얻고 있음. 이는 현행 이수증 발급제도가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3	전수교육방법 추가	< 1차 의견 >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수로 하여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로 전수교육의 중심을 교육기관으로 하려는 것은 중	< 1차 의견 >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원형보존의 원칙은 이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의 정책에서 변경될 것임. 무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요무형문화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서도 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전수관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무형문화재의 원형유지가 안될 것은 불을 보듯이 확실하다. 원형유지와 창조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승제도에 의한 전수관에서의 전승교육은 원형을 유지할 원칙으로 하여 학점 인정을 하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주로 학점인정을 하는 양 방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은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교육이든, 대학교육의 근현대식 교육의 장이든, 무형문화재의 전형적인 가치의 전승이 중심이 되어야 함. ○보유자와 전승교수는 전수교육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전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형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도제식 교육으로는 전수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공예종목의 경우 산업디자인, 경영마인드 함양, 특허권, 지식재산권 이해 확대 등 도제식 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동시에 학습하게 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전형 계승 및 창조적 발전 가능성 증대를 피하고자 하는 것임.
		< 2차 의견 > ○보유자와 전승교수는 전수교육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전수 교육에 참여함은 무형문화재의 저변확대와 창작 및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원형의 보전이 어려워질 것임. ○본 협회는 원형보전은 기존의 전수관을 중심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창조적 발전 및 변형 등은 전수교육대학에서	< 2차 의견 > ○보유자와 전승교수는 전수교육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전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무형문화재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은 도제식 교육으로는 전수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공예종목의 경우 산업디자인, 경영마인드 함양, 특허권, 지식재산권 이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화점을 주는 2원회의 방안이 좋으리라 사료됨. ○더욱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동일하게 전승교수로 위상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를 사고방식으로 엄격한 도제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제 간의 금기를 깨는 것으로서 보유자는 전승교수로 하고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보조자로서 전승전임강사로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해 확대 등 도제식 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동시에 학습하게 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전형 계승 및 창조적 발전 가능성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전수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수로의 명칭변경은 전수교육대학 제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학에서의 강사들을 넓혀 현행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대학 강단에서 전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임.
4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정년제 도입	< 1차 의견 > ○문화재보호법 제24조4항(별첨1)에 의거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상이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명예로 하지는 것이 본 협회의 안임. ○100세 건강을 구가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임. 이은관, 이근화선, 김표영 보유자 등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 작품 수나 공연 횟수는 적어지나 그 예술의 깊이는 더욱 깊어진다고 사료되며, 명예로도 될 수가	< 1차 의견 >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80세 정년제는 이 분들의 전승 활동 능력을 무시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님. 바람에 따라 건강상태의 정도는 다를 것임. ○그러나, 연령제의 도입취지는 무형문화재에 몸담고 있는 다수의 전승자로 하여금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총원의 예측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도적 측면에서 종신제는 보유자 이외의 다수의 전승자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없는 전수교육조교는 80세가 되면 대 선배임에도 평 회원으로 전락하게 되어 선배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조항임.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나도 언제쯤이면 보유자(전수교육조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차세대 전승자의 전승의지를 제고하여 무형문화재의 기층 전승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전승활동에 애로가 있는 보유자·전수교육조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제를 적용받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해당종목의 실질적인 전승활동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제를 검토하게 된 것임. ○더불어 현재 인정되어 있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조항이 있기 전에 인정되었기에 제정법의 적용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개인종목에 명예보유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문화재 예우를 받는 전수교수에 대하여 명예교수로 명명하여 예우하는 조항은 연령제 조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입토록 하겠음. ○연령제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 2차 의견 > ○100세 건강을 구가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임. ○연세가 들면 작품 수나 공연 횟수는 적어지나 그 예술의 값이는 더욱 심오해 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명예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사료됨.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정 당시의 기·예능 보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취소하고, 전승자 충원을 추진할 계획임. 이 법은 보유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기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제정할 것이나 만일 귀 협회의 의견대로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개행사 모니터링, 전수교육 실적확인, 정기조사 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 < 2차 의견 > ○연령제 인정 도입에 대한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공개행사 모니터링, 전수교육 실적 확인, 정기조사 등)를 통하여 인정 당시의 기·예능 보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취소하고, 전승자 충원을 추진할 계획임. ○기업, 교사, 공무원, 대학교수에 정년제가 있는 것은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60~65세 이후에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님과 같이,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기에 평균생존연령인 80세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려는 것임.
5	단체종목 보유자 및 개인종목 전수교육조교 불인정	< 1차 의견 > ○문화재청에서는 단체종목에서는 단체종목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보유자가 있을 수 없다는 법리해석을 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 단체종목이 된다고 했음. 즉 보유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야 단체종목인 것임. ○단체종목에서 보유자를 없애고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수로 한다면 개인 종목의 보유자는 80세에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지만, 단체종목에서는 보유자가 없으므로 전승교수는 80세가 정년이며 명예제도가 없으므로 단체종목에서는 80세 이상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임. ○앞으로 단체종목에서의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 같은 춤의 명인도 보유제도가 없어지고, 전승교수는 명예제도	< 1차 의견 > ○현행법에서 보유단체는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보유단체 종목은 먼천두견주 하나뿐임. 먼천두견주는 각각의 전승자가 술을 담을 수 있는 보유자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를 개별 보유자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보유단체의 정의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여 보유단체로 인정했던 것임. 그러나 이외의 보유단체는 집단 구성원의 각각 기예가 결합되어야 온전한 종목으로 기능하므로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는 보유단체는 아님. 따라서 개정된 법에는 보유단체의 정의를 무형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대로 취득하고 실현·강습할 수 있는 단체로서 바꾸어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보유단체에는 논리구조상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가 없으므로 80세가 되면 평화원이 되게 되는 것임. ○그러면서도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 5항에서 보유자 및 전승교수를 인간문화재로 통칭한다 하였음. ○결국 단체종목에서는 다수의 전승교수 인간문화재만 있게 되고, 개인종목에서는 다수의 보유자 인간문화재만 있게 되는 것임. ○이것은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위상의 차이로 인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체에 커다란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것임. ○본 협회는 중요무형문화재 기. 예능 종합축제를 개최하여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대국을 이룩하는데 견인치의 역할을 하려하고 있음. 정적인 기능의 전시회와 동적인 예능의 만남은 환상적인 결합이 될 것이며,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위화감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임.	보유자를 둘 수 없고, 개개의 기예를 전승하는 전승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전승교수는 인간문화재의 명칭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 종목의 보유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개인종목의 경우, 전수교육조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현재 전수교육조교가 실제로 보유자의 전수교육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일부 가계전승 종목 제외), 사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급된 전수조교 몫의 전승지원금은 모두 회수되어야 하며, 전수조교가 보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치한 보유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또한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가 구축적이고 폐쇄적인 전승체계로 기능하여 조교로 선정되지 못한 이수자의 중도탈락, 전승의욕 저하, 전수조교 중 보유자 충원시 갖가지 잡음 발생 등 전승자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종목에서 현실성 없는 전수교육조교 제도를 폐지하고 보유자-이수자 제도로 체계화하는 것임. 이는 단체종목의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 2차 의견 > ○단체종목은 종목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으로 보유자를 없애고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수로서하여 인간문화재로 호칭한다면, 인간문화재라는 호칭 자체가 단체종목에서 문화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앞뒤가 안 맞는 발상임. ○또한 단체종목에서는 조교급 인간문화재, 개인종목에서는 보유자급 인간문화재만 남게 되어, 단체종목과 개인	전승교수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와 균형을 같이 하고 있음. 법 제정 이후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전수교육조교는 공히 전승교수로 전환되며, 개인종목의 전승교수는 점진적으로 보유자로 전환하고 향후 추가적인 전승교수는 인정하지 않을 것임. ○궁극적으로 개인종목의 보유자와 단체종목의 전승교수는 동일한 예우로써 인간문화재가 되며, 그 아래에 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가 구축되므로 귀 협회에 우려하고 있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전승질서 불균형은 없을 것임. < 2차 의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즉,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이들을	

연번	핵심쟁점사항	전승자 의견	문화재청 의견
		종목의 위상의 차이로 인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체에 커다란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임. 본 협회는 중요무형 문화제 기·예능 종합축제를 개최하여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대국으로의 초석이 되고자 하며, 점차 삼비축제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바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위화감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임. ○그러므로 본 협회는 귀 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종전의 방식대로 하여 줄 것을 청원함.	보유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임. 따라서 보유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귀 협회 주장은 옳지 않음. ○단체종목의 전승교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될 것임. 다만 현존하는 단체종목의 보유자와의 일정기간 양립을 법률 적용의 일반성 원리에 따라 불가피함. ○후배, 제자가 종전보다 나은 위상과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여 그 스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봄.

□ 협회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연번	청원 사항	협회	문화재청 의견
1	문화재청 주관의 교육프로그램 요청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구정원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음. 각종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및 전문기 양성교육을 법제화 해 주시어 중요무 형문화재 전체의 수준의 향상과 종전의 귀 청에 서 우려하시는 불미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 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각종 공개행사 및 기획 행사의 귀 청의 주관화만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귀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또한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심의 활동에 이론과 더불어 실기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주기를 청원한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2013년 6월에 건립되면 귀 단체가 희망하시는 사항이 추 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각종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의 문화재청 주관화		
3	문화재 조사·발굴 시 보유자 참여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승자 간의 전승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및 전수교수가 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